

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2호, **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
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
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
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액 등 증가로
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
‘재무활동’ 금액이 당초대비 20%를 초과하여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
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및 이에 따른
예치금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

나. 운용규모 : 2,220,830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1,709,289백만원 증가)

-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 수입계획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 (A)	변 경		증 감 (B-A)
		1차*	2차(B)	
계	511,541	526,887	2,220,830	1,709,289
전 입 금	-	-	1,681,959	1,681,959
이자수입	16,039	24,872	36,856	20,817
예 치 금 수 회	495,502	502,015	502,015	6,513

< 지출계획 >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	당초 (C)	변경		증 감 (D-C)
			1차*	2차(D)	
계		511,541	526,887	2,220,830	1,709,289
재무활동	소 계	511,350	526,696	2,220,608	1,709,258 (증 334%)
	기타회계	150,000	150,000	150,000	-
	전 출 금	200,000	300,000	300,000	100,000
	차 입 금 원금상환	23,955	36,433	36,433	12,478
	차 입 금 이자상환	137,395	40,263	1,734,175	1,596,780
행정운영경비	소 계	191	191	222	31 (증 16%)
	기본경비	191	191	222	31

* 재무활동 2.4% 변경(20% 미만)으로 소관 상임위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(제308회 정례회, '22. 6.)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위해 전입금 1,681,959백만원 증가

▶ 전입금 : (당초) 0원 → (2차) 1,681,959백만원

·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(5조 8,712억원) 중 법정 의무경비(2조 5,073억원)를 제외한 잔액(3조 3,639억원)의 50% 적립

- 순세계잉여금 적립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당초대비 20,817백만원 증가

▶ 이자수입 : (당초) 16,039백만원 → (1차) 24,872백만원 → (2차) 36,856백만원

※ 이자수입 증가 세부내역

- 8~12월분(11,984백만원) : 1,681,959백만원 × 1.71%(공공예금 이자율) ÷ 12 × 5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예치금이 당초대비 1,596,780백만원 증가
 - ▶ 예치금 : (당초) 137,395백만원 → (1차) 40,263백만원 → (2차) 1,734,175백만원
- 지방채 발행 수수료 지급 등 기본경비 31백만원 증가
 - ▶ 기본경비 : (당초) 191백만원 → (2차) 222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〉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

- 관련 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- 관련 조례는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%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1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(5조 8,712억원)중 법정 경비(2조 5,073억원)를 정산한 순세계잉여금(3조 3,639억원)의 50%에 해당하는 1조 6,819억 5,900만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계획중 **전입금**에 반영하고,
 - 순세계잉여금 적립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208억 1,700만원을 **이자수입**에 반영하여 수입계획을 당초보다 1조 7,092억 8,900만원 증액하여 수입계획을 운용하려는 것임
-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1조 7,092억 8,900만원을 증액 운용할 계획으로,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중 예치금** 1조 5,967억 8,000만원과 **차입금 원금상환**(1,000억원), **차입금 이자상환**(124억 7,800만원)을 증액하고, 다른 정책사업인 **행정운영경비중 기금관리비** 3,100만원을 증액조정하는 것으로서
 - **행정운영경비**의 경우, 당초 지출계획(1억 9,100만원)보다 16.2%, 3,1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나
 - **재무활동**의 경우에는 당초 지출계획(5,113억 5,000만원)보다 334.3%, 1조 7,092억 5,8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

〈표 3-1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정책사업 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 책 사 업 / 세 부 사 업		당초 (A)	변경 (B)	증 ·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지 출 합 계		511,541	2,220,830	1,709,289	334.1
재 무 활 동		511,350	2,220,608	1,709,259	334.3
기 타 회 계 전 출 금		150,000	150,000	-	-
여 유 자 금 예 치 (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)		137,394	1,734,175	1,596,781	1,162.2
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		200,000	300,000	100,000	50.0
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		23,955	36,433	12,478	52.1
행 정 운 영 경 비		191	222	31	16.2
기 금 관 리 비		191	222	31	16.2

- 동 계정의 경우, 지난 5월,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「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」를 개최하여
 - '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과 정기예금 금리인상에 따른 공공 예금이자수입을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(65억 1,300만원), **이자수입**(88억 3,300만원)에 각각 반영하고,
 -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①**차입금 원금상환**(1,000억원)과 ②**차입금 이자상환**(124억 7,800만원)을 증액조정하고, ③**예치금**(△971억 3,200만원)을 감액조정 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바,
 -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은 당초 지출계획(5,113억 5,000만원)보다 3.0%, 153억 4,6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정책사업비의 20% 미만을 변경함에 따라 「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의 심의로 갈음한 것으로 확인됨

〈표 3-2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1차 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 책 사 업 / 세 부 사 업		당초 (A)	1차 변경 (B)	증 ·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지 출 합 계		511,541	526,887	15,346	3.0
재 무 활 동		511,350	526,696	15,346	3.0
기 타 회 계 전 출 금		150,000	150,000	0	-
여 유 자 금 예 치 (통합 재정 안정 화 기 금 재 정 안 정 화 계 정)		137,394	40,263	△97,131	△70.7
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		200,000	300,000	100,000	50.0
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		23,955	36,433	12,478	52.1
행 정 운 영 경 비		191	191	0	-
기 금 관 리 비		191	191	0	-

○ 아울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중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변경에 대해 “재무활동 2.4% 변경”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,

- 1차 변경시 해당 계정의 재무활동은 당초 지출계획(5,113억 5,000만원)보다 153억 4,600만원을 증액하여 3.0%를 변경한 것으로 계산되나, 백분율 수치로는 0.6%포인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당초 재무활동 지출계획액(5,113억 5,000만원)과 비교하면, 30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만 기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○ 관련 법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,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,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,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

- 「2022~2026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」은 지난해 12월, 예산안이 수정 의결 되었고, '22년 4월에도 '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수정의결된 바 있으며 금번 제311회 임시회의 의안으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인하여 재정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어 「2022~2026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- 그러나 관련 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
- 뿐만아니라 관련 법과 관련 기준은 또한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변경 결과를 즉각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동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관련 기준이 관련 법의 단서를 근거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,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

- 서울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결과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기간 불일치되는 결과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- 더욱이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」의 경우, 당초 지출계획보다 1조 7,092억 8,9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동 기금의 예치금은 결국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